

#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심사보고서

2022. 3. 22.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565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4. 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
- 나. 상정의결
  - 제30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2. 3. 22.)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양미영)

- 가. 제안이유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와 구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2명을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옴부즈만 운영 개요
    - 위촉인원 : 2명
    - 위촉기간 : 2022. 4월 ~ 2022. 12월(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 근무장소 : 강남구청 별관 2층
- 근무시간 : 월 ~ 금 (주 3회씩 1일 순환근무, 합의제)
- 22년도 예산 : 49,564천원
  - ▶ 수당 28,800천원, 홍보물 제작비 등 20,764천원
- 근무수당 : 100,000원 / 1회

○ ombudsman 위촉 동의 대상

연번	성명	생년월일 (나이)	신청자격	주요이력
1	나윤준	58.3.19 (65세)	4급이상 공무원	- 서울시 시민참여ombudsman(현) -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술서기관(전)
2	김희철	62.9.3 (61세)	토목시공기술사 자격	- 선문대학교 안전공학과 부교수(현) -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겸임 부교수(전)

※ 선정방법: 2022. 2. 25.(금) 비상임ombudsman 심사위원회 면접심사

○ ombudsman 주요업무

- 강남구 ombudsman 회의 및 심의·의결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의 관련 서류 열람
-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 ombudsman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도출
- 구민 청원에 관한 사항 처리(청원심의회 구성 운영)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ombudsman에 의뢰한 사안의 조사·처리
- 운영상황 구청장·구의회 보고 및 구보와 인터넷홈페이지 공표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38조<sup>1)</sup>에 근거하여 2022.1.7. 시행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4조제3항<sup>2)</sup>에 따라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에 대한 구의회 동의서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옴부즈만의 직무상·신분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구청장의 자의적 임용과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됨.
  - 옴부즈만은 구성은 5명(행정6급 1명 포함)으로 구성되며 상임(대표)옴부즈만(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명, 행정지원(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은 공개모집하여 구청장이 임용하고 비상임옴부즈만 2명은 공개모집 후 구의회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치려는 것임.

구 성	인원	채용직급	자격	임용기간
상임(대표)옴부즈만 (주 35시간)	1명	임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전문가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위촉일 ~ 2022.12.31 (강남구 옴부즈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범운영)
비상임옴부즈만 (주 3회, 일 4시간)	2명	위촉 (의회동의)		
행정지원 인력 (주 35시간)	1명	임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일반사무능력	

- 위촉동의 대상 2명은 조례 제4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보이나 경력, 근무기관 등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해 보임. 다만,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구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비상임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대상자 2명 모두 기술분야 경력자이고 연령이 많아 경험은 풍부할 것으로 보이나 비상임인 관계로 해당 업무에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 공고기간<sup>3)</sup> 및 원서접수기간은 각각 12일, 7일 간 하였고 총 9명이 지원하여 2명을 선발하여 위촉하려는 것임.

- 위촉기간은 2022.4.~2022.12. 9개월로, 이는 조례 부칙 제2조에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12.31. 한시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임. 한편, 부패방지법 제33조<sup>4)</sup>에서는 옴부즈만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례 제5조<sup>5)</sup>에서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당 법률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

3) - 공고기간 : 2022. 1. 28.(금) ~ 2022. 2. 9.(수) <12일간>

- 원서접수기간 : 2022. 2. 10.(목) ~ 2022. 2. 18.(금) <7일간>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임기 등)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임원부조만 위촉 동의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안 번호	565
----------	-----

제출연월일 : 2022. 3. 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감사담당관

## 1. 제안이유

- 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와 구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따라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2명을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강남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 2.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

□ 인원 : 2명

연번	성명	생년월일 (나이)	신청자격	주요이력
1	나운준	58.3.19 (65세)	4급이상 공무원	-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현) -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술서기관(전)
2	김희철	62.9.3 (61세)	토목시공기술사 자격	- 선문대학교 안전공학과 부교수(현) -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겸임 부교수(전)

※ 선정방법 : 2022. 2.25.(금) 비상임옴부즈만 심사위원회 면접심사

## 3. 옴부즈만 운영 개요

- 가. 위촉인원 : 2명
- 나. 위촉기간 : 2022. 4월 ~ 2022. 12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다. 근무장소 : 강남구청 별관 2층

라. 근무시간 : 월~금 (주 3회씩 1일 4시간 순환근무, 합의제)

마. '22년도 예산 : 49,564천원

— 수당 28,800천원, /홍보물 제작비 등 20,764천원

바. 근무수당 : 100,000원/1회

#### 4. ombudsman 주요업무

가. 강남구 ombudsman 회의 및 심의·의결

나.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다.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라.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의 관련서류 열람

마.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상시 청렴계약 감시·평가<sup>6)</sup>

바. ombudsman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도출

사. 구민 청원에 관한 사항 처리 (청원심의회 구성 운영)

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ombudsman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처리

자. 운영상황 구청장·구의회 보고 및 구보와 인터넷홈페이지 공표

#### 5.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ombudsman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구성)** ① ombudsman은 구청장 소속으로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② ombudsman은 상임ombudsman 1명과 비상임ombudsman 2명 이내로 구성하고 상임ombudsman을 대표ombudsman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ombudsman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비상임ombudsman은 서

6)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범위 : ①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공사 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③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 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제2항에 따라 읍부즈만을 구성할 때에는 읍부즈만의 성별을 고려한다.